

6월2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 번호	건축 구분	심의 구분	대지위치	대지면 적	건축면 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비고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 000P0016 09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477	7,957	1,570. 1	1,570.1	19.732 3	19.732 3	운동시설	1/	자연녹지지 역	20.06.1 1		취하	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.
2	20206500 000P0015 04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946	553	46.75	46.75	8.45	8.45	창고시설	1/0	보전녹지지 역	20.06.1 1	도로 지정	반려	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3	20206500 000P0015 83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 성리 3904	428	85.05	85.05	19.871 5	19.871 5	단독주택	1/	보전관리지 역	20.06.1 1		조건부동의	주차장 부분 용벽은 자연재 마감 계획 바랍니다.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